

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」 일부 개정안

1. 개정이유

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대평가 평가기준 변경(안 별표5 제1호, 제2호)

- 1) ‘환자구성상태’는 ‘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’로 명칭을 변경하고, 세부 평가항목은 중증진료 중심 체계개선을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외래질병 비율은 기준을 강화하고,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은 삭제하며, 병의원 회송체계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여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.
- 2) ‘의료인 수’ 평가기준은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기준을 신설하고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.
- 3) ‘의료서비스 수준’에서 ‘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’의 평가항목은 위수술, 심장수술, 녹내장수술을 담낭수술, 유방수술, 폐절제술로 변경함.
- 4) ‘공공성’ 평가기준을 신설하여 공익적 의료영역을 강화하고, 평가항목으로는 중환자실 병상확보율,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, 코로나19 참여기여도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.

5) 상대평가 일부항목이 신설 및 삭제됨에 따라 기준별 가중치를 변경하여 적용함.

나. 가점 평가기준 신설(안 별표5 제3호)

희귀·응급질환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비율 및 중증응급질환비율을 신설하고 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2조 및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표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265호

「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」 일부개정안

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2023년 6월 30일”을 “2026년 6월 30일”로 한다.

별표2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별 배점

| 평가분류 | 평가항목 | 평가항목수 | 표준등급충족평가항목수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심장·뇌 질환 | 관상동맥우회술, 급성기뇌졸중 | 2개 | 2개 | 2 |
| | | | 1개 | 1 |
| 암 질환 | 대장암, 유방암, 폐암, 위암 | 4개 | 4개 | 2 |
| | | | 3개 | 1.5 |
| | | | 2개 | 1 |
|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| 담낭수술, 대장수술, 고관절치환술, 자궁적출술, 유방수술, 개두술, 전립선절제술, 폐절제술 | 8개 | 7개 이상 | 2 |
| | | | 6개 | 1.5 |
| | | | 5개 | 1 |
| | | | 4개 | 0.5 |
| 중환자실 | 중환자실, 신생아중환자실 | 2개 | 2개 | 2 |
| | | | 1개 | 1 |
| 환자중심 | 환자경험 | 1개 | 영역별 합산점수를 10점으로 환산 | 환산점수×0.2 |

별표5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

| 상대평가 기준 | | 가중치(%) |
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
|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|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| 40 |
| |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| 5 |
| | 경증회송률 | 5 |
| 의료인 수 |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| 18 |
| |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 | 2 |
| |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| 10 |
| 교육기능 |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미취통증의학과, 심장혈관흉부외과, 방사선종양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병리과, 핵의학과, 응급의학과 의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수 | 5 |
| | 의료질 평가 중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 | 5 |
| 의료서비스 수준 |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산출점수 | 5 |
| 공공성 |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| 2 |
| |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| 2 |
| | 코로나19 참여기여도 | 1 |
| 합계 | | 100 |

별표5 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

| 평가항목 | 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 |
|--|---|
|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| 1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50%이상인 경우 10점 2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4%인 경우 6점 3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34% 초과 50% 미만인 경우 (전문진료질병군 비율 $XX.XX \times 0.25$)-2.50 |
|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| 1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2.0% 이하인 경우 10점 2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7.0%인 경우 6점 3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2.0% 초과 7.0% 미만인 경우 (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$XX.XX \times (-0.80)$)+11.60 |
| 경증회송률 | 1) 경증회송률이 3.0%이상인 경우 10점 2) 경증회송률이 0.1%인 경우 6점 3) 경증회송률이 0.1% 초과 3.0% 미만인 경우 (경증회송률 $XX.XX \times 1.3793$)+5.8621 |

별표5 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

| 항목 | | 등급구간 및 배점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의료인수 |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| 점수 | 10점 | 9점 | 8점 | 7점 | 6점 |
| | 구간 | 4명 이하 | 5.5명 이하 4.0명 초과 | 7.0명 이하 5.5명 초과 | 8.5명 이하 7.0명 초과 | 10명 이하 8.5명 초과 | |
| |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배치수준 | 1) 기준병상당(300병상 당)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수 | | | | | |
| | | 점수 | 1점 | 0.75점 | 0.5점 | | |
| | | 구간 | 1.0명 이상 | 1.0명 미만 ~ 0.4명 이상 | 0.4명 미만 ~ 0명 초과 | | |
| | | 2) 입원환자전담전문의 팀구성 현황 | | | | | |
| | | 점수 | 1점 | 0.5점 | 0.3점 | | |
| | | 유형 | 3형 (주7일형-24시간) | 2형 (주7일형-주간) | 1형 (주5일형-주간) | | |
| 의료인수 |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| 점수 | 10점 | 9점 | 8점 | 7점 | 6점 |
| | 구간 | 1.9명 이하 | 2.0명 이하 ~ 1.9명 초과 | 2.1명 이하 ~ 2.0명 초과 | 2.2명 이하 ~ 2.1명 초과 | 2.3명 이하 ~ 2.2명 초과 | |
| 교육기능 |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| 점수 | 10점 | 9점 | 8점 | 7점 | 6점 |
| | 구간 | 10개과 이상 | 9개과 | 8개과 | 7개과 | 6개과 | |
| | 교육수련 영역 평가 | 의료질 평가의 교육수련 영역 평가의 최근 3년 결과를 연도별로 10점 환산하여 3년 평균 결과 반영 | | | | | |

별표5 제2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공공성

| 평가항목 | 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점수 | 2점 | 1.5점 | 1점 |
|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| 구간 | 10%이상 | 9%이상~ 10%미만 | 8%이상~ 9%미만 |
|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| 구간 | 1.0%이상 | 0.9%이상~ 1.0%미만 | 0.8%이상~ 0.9%미만 |
| 코로나19 참여기여도 | 1) 서울특별시, 제주특별자치도 가) (2021년) 3.77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3.77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2452) + 0.0756]$ 나) (2022년) 1.8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초과 1.82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5233) + 0.0476]$ 2) 경기도, 인천광역시 가) (2021년) 2.30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2.30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4091) + 0.0591]$ 나) (2022년) 1.0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.0% 미만인 경우: $[XX.XX \times 1]$ 3) 강원특별자치도 가) (2021년) 28.68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28.68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315) + 0.0966]$ 나) (2022년) 18.5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8.52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489) + 0.0944]$ 4) 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가) (2021년) 14.18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4.18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639) + 0.0939]$ 나) (2022년) 7.15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7.15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1277) + 0.0869]$ 5)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가) (2021년) 10.04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0.04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905) + 0.0914]$ 나) (2022년) 5.2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5.22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1758) + 0.0823]$ 6) 경상북도, 경상남도,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가) (2021년) 5.17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5.17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1775) + 0.0823]$ 나) (2022년) 2.66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초과 2.66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3516) + 0.0647]$ | | | |

* 2021년(가중치 50%)은 코로나19 중증환자비율, 2022년(가중치 50%)은 코로나19 준중증이상 환자비율로 산출

별표5 제3호2)나)를 2)라)로 하고, 같은 호 2)나) 및 2)다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) 희귀질환비율은 1.3%이상인 경우 1점, 0.4%인 경우 0.6점, 0.4% 초과 1.3% 미만인 경우는 산출식 $[(XX.XX \times 0.4444) + 0.4223]$ 에 따라 가점 적용 (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

다) 중증응급질환비율은 35.0%이상인 경우 1점, 6.0%인 경우 0.6점, 6.0% 초과 35.0%미만인 경우는 산출식 $[(XX.XX \times 0.0138) + 0.5170]$ 에 따라 가점 적용(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대평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) 별표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및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은 지정신청일 전월말 기준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질병종류 및 환자구성비율에 관한 특례)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자에 대하여는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(2020.12.24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08호) 별표6에 의한다.

② 별표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및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제2호가목의 종전규정을 따르며, 2

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다.

제4조(상대평가 방법에 관한 특례) ① 별표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증회송률 및 제3호2)나) 개정 규정에 따른 희귀질환비율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② 별표5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수준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6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③ 별표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코로나19 참여기여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④ 별표5 제3호2)다) 개정규정에 따른 중증응급질환비율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10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 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 여야 하는 기한은 <u>2023년 6월 30일</u> 까지로 한다. | 제10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6년 6월 30일</u> ----- ----- |

[별표 2]

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 및 점수 산정방법 (제4조 관련)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| | | | 개정안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별 배점 | | | | | 1.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항목별 배점 | | | | |
| 평가 분류 | 평가 항목 | 평가 항목수 | 표준등급 총중평가 항목수 | 배점 | 평가 분류 | 평가 항목 | 평가 항목수 | 표준등급 총중평가 항목수 | 배점 |
| 심장· 뇌 질환 | 관상동맥우 회술, 급성 기뇌졸중 | 2개 | 2개 | 2 | 심장· 뇌 질환 | 관상동맥우 회술, 급성 기뇌졸중 | 2개 | 2개 | 2 |
| | | | 1개 | 1 | | | | 1개 | 1 |
| 암 질환 | 대장암, 유방암, 폐암, 위암 | 4개 | 4개 | 2 | 암 질환 | 대장암, 유방암, 폐암, 위암 | 4개 | 4개 | 2 |
| | | | 3개 | 1.5 | | | | 3개 | 1.5 |
| | | | 2개 | 1 | | | | 2개 | 1 |
|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| 위수술, 대장수술, 고관절치환술, 자궁적출술, 심장수술, 개두술, 전립선절제술, 녹내장수술 | 8개 | 7개 이상 | 2 |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수술 | 담낭수술, 대장수술, 고관절치환술, 자궁적출술, 유방수술, 개두술, 전립선절제술, 폐절제술 | 8개 | 7개 이상 | 2 |
| | | | 6개 | 1.5 | | | | 6개 | 1.5 |
| | | | 5개 | 1 | | | | 5개 | 1 |
| | | | 4개 | 0.5 | | | | 4개 | 0.5 |
| 중환자실 | 중환자실, 신생아중환자실 | 2개 | 2개 | 2 | 중환자실 | 중환자실, 신생아중환자실 | 2개 | 2개 | 2 |
| | | | 1개 | 1 | | | | 1개 | 1 |
| 환자중심 | 환자경험 | 1개 | 영역별 합산점수를 10점으로 환산 | 환산점수 ×0.2 | 환자중심 | 환자경험 | 1개 | 영역별 합산점수를 10점으로 환산 | 환산점수 ×0.2 |
| 2. (생략) | | | | | 2. (현행과 동일) | | | | |

[별표 5]

상대평가 방법 (제7조 관련)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행 | | | 개정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1.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| | | 1. 상대평가 기준 및 기준별 가중치 | | |
| 상대평가 기준 | | 가중치(%) | 상대평가 기준 | | 가중치(%) |
| 환자 구성상태 |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| 45 | 환자 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|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| 40 |
| |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 | 5 | |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| 5 |
| |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| 5 | | 경증회송률 | 5 |
| 의료인 수 |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| 20 | 의료인 수 |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| 18 |
| |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| 10 | |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| 2 |
| 교육 기능 |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미취통증 의학과, 흉부외과, 방사선종양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병리과, 핵의학과, 응급의학과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수 | 5 | | 교육 기능 |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미취통증 의학과, 심장혈관흉부외과, 방사선 종양학과, 진단검사의학과, 병리과, 핵의학과, 응급의학과 12개 과목 중 레지던트가 상근하는 과목수 |
| | 의료질 평가 중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 | 5 | 의료질 평가 중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 | | 5 |
| 의료 서비스 수준 |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산출점수 | 5 | 의료 서비스 수준 | 의료서비스 수준 평가결과 산출점수 | 5 |
| 합계 | | 100 | 공공성 |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| 2 |
| | | | |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| 2 |
| | | | | 코로나19 참여기여도 | 1 |
| | | | 합계 | | 100 |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------------|---|
| <p>2.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</p> <p>가. <u>환자구성상태</u></p> | <p>2. 상대평가 기준별 등급구간 및 배점</p> <p>가. <u>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</u>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가항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</td> <td> 1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44%</u>이상인 경우 10점 2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0%</u>인 경우 6점 3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0%</u> 초과 <u>44%</u> 미만인 경우 (전문진료질병군 비율 $XX.XX \times 0.2857$)-2.5708 </td> </tr> <tr> <td>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</td> <td> 1)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.4% 이하인 경우 10점 2)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14%인 경우 6점 3)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.4% 초과 14% 미만인 경우 (단순진료질병군 비율 $XX.XX \times (-0.7142)$)+15.9992 </td> </tr> <tr> <td>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」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</td> <td> 1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4.5%</u> 이하인 경우 10점 2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11%</u>인 경우 6점 3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4.5%</u> 초과 <u>11%</u> 미만인 경우 (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$XX.XX \times (-0.6153)$)+12.7688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평가항목 | 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 |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| 1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44%</u> 이상인 경우 10점 2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0%</u> 인 경우 6점 3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0%</u> 초과 <u>44%</u> 미만인 경우 (전문진료질병군 비율 $XX.XX \times 0.2857$)-2.5708 |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| 1)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.4% 이하인 경우 10점 2)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14%인 경우 6점 3)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.4% 초과 14% 미만인 경우 (단순진료질병군 비율 $XX.XX \times (-0.7142)$)+15.9992 |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」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| 1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4.5%</u> 이하인 경우 10점 2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11%</u> 인 경우 6점 3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4.5%</u> 초과 <u>11%</u> 미만인 경우 (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$XX.XX \times (-0.6153)$)+12.7688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평가항목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</td> <td> 1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50%</u>이상인 경우 10점 2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4%</u>인 경우 6점 3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4%</u> 초과 <u>50%</u> 미만인 경우 (전문진료질병군 비율 $XX.XX \times 0.25$)-2.50 </td> </tr> <tr> <td>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」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</td> <td> 1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2.0%</u> 이하인 경우 10점 2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7.0%</u>인 경우 6점 3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2.0%</u> 초과 <u>7.0%</u> 미만인 경우 (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$XX.XX \times (-0.80)$)+11.60 </td> </tr> <tr> <td><u>경증회송률</u></td> <td> 1) 경증회송률이 3.0%이상인 경우 10점 2) 경증회송률이 0.1%인 경우 6점 3) 경증회송률이 0.1% 초과 3.0% 미만인 경우 (경증회송률 $XX.XX \times 1.3793$)+5.8621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평가항목 | 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 |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| 1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50%</u> 이상인 경우 10점 2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4%</u> 인 경우 6점 3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4%</u> 초과 <u>50%</u> 미만인 경우 (전문진료질병군 비율 $XX.XX \times 0.25$)-2.50 |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」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| 1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2.0%</u> 이하인 경우 10점 2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7.0%</u> 인 경우 6점 3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2.0%</u> 초과 <u>7.0%</u> 미만인 경우 (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$XX.XX \times (-0.80)$)+11.60 | <u>경증회송률</u> | 1) 경증회송률이 3.0%이상인 경우 10점 2) 경증회송률이 0.1%인 경우 6점 3) 경증회송률이 0.1% 초과 3.0% 미만인 경우 (경증회송률 $XX.XX \times 1.3793$)+5.8621 |
| 평가항목 | 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| 1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44%</u> 이상인 경우 10점 2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0%</u> 인 경우 6점 3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0%</u> 초과 <u>44%</u> 미만인 경우 (전문진료질병군 비율 $XX.XX \times 0.2857$)-2.5708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| 1)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.4% 이하인 경우 10점 2)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14%인 경우 6점 3)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이 8.4% 초과 14% 미만인 경우 (단순진료질병군 비율 $XX.XX \times (-0.7142)$)+15.999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」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| 1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4.5%</u> 이하인 경우 10점 2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11%</u> 인 경우 6점 3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4.5%</u> 초과 <u>11%</u> 미만인 경우 (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$XX.XX \times (-0.6153)$)+12.7688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평가항목 | 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구성비율 | 1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50%</u> 이상인 경우 10점 2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4%</u> 인 경우 6점 3)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이 <u>34%</u> 초과 <u>50%</u> 미만인 경우 (전문진료질병군 비율 $XX.XX \times 0.25$)-2.5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」 별표6에 따른 질병에 속하는 외래환자의 비율 | 1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2.0%</u> 이하인 경우 10점 2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7.0%</u> 인 경우 6점 3) 외래환자의 구성비율이 <u>2.0%</u> 초과 <u>7.0%</u> 미만인 경우 (외래환자의 구성 비율 $XX.XX \times (-0.80)$)+11.6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<u>경증회송률</u> | 1) 경증회송률이 3.0%이상인 경우 10점 2) 경증회송률이 0.1%인 경우 6점 3) 경증회송률이 0.1% 초과 3.0% 미만인 경우 (경증회송률 $XX.XX \times 1.3793$)+5.862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현 행

나.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

| 항목 | 배점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10점 | 9점 | 8점 | 7점 | 6점 | |
| 의료인수 |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| 4.0 명이하 | 5.5 명이하 ~4.0 명초과 | 7.0 명이하 ~5.5 명초과 | 8.5 명이하 ~7.0 명초과 | 10 명이하 ~8.5 명초과 |
| | 간호사 1 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| 1.9 명이하 | 2.0 명이하 ~1.9 명초과 | 2.1 명이하 ~2.0 명초과 | 2.2 명이하 ~2.1 명초과 | 2.3 명이하 ~2.2 명초과 |
| 교육기능 |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| 10개과 이상 | 9개과 | 8개과 | 7개과 | 6개과 |
| | 교육수련 영역 평가 | 의료질 평가의 교육수련 영역 평가의 최근 3년 결과를 연도별로 10점 환산하여 3년 평균 결과 반영 | | | | |

다. (생략)
<신설>

개 정 안

나. 의료인 수 및 교육기능

| 항목 | 등급구간 및 배점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점수 | 10점 | 9점 | 8점 | 7점 | 6점 |
| 의료인수 |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| 구간 4명 이하 | 5.5명 이하 4.0명 초과 | 7.0명 이하 5.5명 초과 | 8.5명 이하 7.0명 초과 | 10명 이하 8.5명 초과 |
| |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배치수준 | 1) 기준병상당(300병상 당) 입원환자전담전문의수 | | | | |
| 점수 | | 1점 | 0.75점 | 0.5점 | | |
| 구간 | 1.0명이상 | 1.0명 미만 ~ 0.4명 이상 | 0.4명 미만 ~ 0명 초과 | | | |
| 2) 입원환자전담전문의 팀구성 현황 | | | | | | |
| 점수 | 1점 | 0.5점 | 0.3점 | | | |
| 유형 | 3형 (주7일형 -24시간) | 2형 (주7일형 -주간) | 1형 (주5일형 -주간) | | | |
| 의료인수 | 간호사 1인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| 구간 1.9명 이하 | 2.0명 이하 ~ 1.9명 초과 | 2.1명 이하 ~ 2.0명 초과 | 2.2명 이하 ~ 2.1명 초과 | 2.3명 이하 ~ 2.2명 초과 |
| | 교육기능 | 레지던트 상근 과목수 | 구간 10 개과 이상 | 9 개 과 | 8 개 과 | 7 개 과 |
| 교육수련 영역 평가 | | 의료질 평가의 교육수련 영역 평가의 최근 3년 결과를 연도별로 10점 환산하여 3년 평균 결과 반영 | | | | |

다. (현행과 같음)
라. 공공성

| 평가항목 | 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점수 | 2점 | 1.5점 | 1점 |
|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| 구간 | 10%이상 | 9%이상~ 10%미만 | 8%이상~ 9%미만 |
| | 점수 | 2점 | 1.5점 | 1점 |
| 응급격리 병실 병상확보율 | 구간 | 1.0%이상 | 0.9%이상~ 1.0%미만 | 0.8%이상~ 0.9%미만 |
| | 점수 | 2점 | 1.5점 | 1점 |

| 현행 | 개정안 | | | | | | | | |
|---|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|--|---|--|
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839 297 946 439">평가 항목</th> <th data-bbox="946 297 1399 439">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839 439 946 2004" rowspan="5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<u>코로나19</u> <u>참여</u> <u>기여도</u></td> <td data-bbox="946 439 1399 757"> 1) 서울특별시, 제주특별자치도 가) (2021년) 3.77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3.77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2452) + 0.0756]$ 나) (2022년) 1.8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초과 1.82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5233) + 0.0476]$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46 757 1399 1039"> 2) 경기도, 인천광역시 가) (2021년) 2.30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2.30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4091) + 0.0591]$ 나) (2022년) 1.0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.0% 미만인 경우: $[XX.XX \times 1]$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46 1039 1399 1357"> 3) 강원특별자치도 가) (2021년) 28.68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28.68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315) + 0.0966]$ 나) (2022년) 18.5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8.52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489) + 0.0944]$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46 1357 1399 1715"> 4) 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가) (2021년) 14.18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4.18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639) + 0.0939]$ 나) (2022년) 7.15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7.15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1277) + 0.0869]$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946 1715 1399 2004"> 5)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가) (2021년) 10.04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0.04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905) + 0.0914]$ 나) (2022년) 5.2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5.22% 미만인 경우: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평가 항목 | 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 | <u>코로나19</u> <u>참여</u> <u>기여도</u> | 1) 서울특별시, 제주특별자치도 가) (2021년) 3.77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3.77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2452) + 0.0756]$ 나) (2022년) 1.8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초과 1.82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5233) + 0.0476]$ | 2) 경기도, 인천광역시 가) (2021년) 2.30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2.30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4091) + 0.0591]$ 나) (2022년) 1.0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.0% 미만인 경우: $[XX.XX \times 1]$ | 3) 강원특별자치도 가) (2021년) 28.68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28.68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315) + 0.0966]$ 나) (2022년) 18.5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8.52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489) + 0.0944]$ | 4) 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가) (2021년) 14.18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4.18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639) + 0.0939]$ 나) (2022년) 7.15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7.15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1277) + 0.0869]$ | 5)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가) (2021년) 10.04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0.04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905) + 0.0914]$ 나) (2022년) 5.2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5.22% 미만인 경우: |
| 평가 항목 | 등급 구간 및 배점 (* 배점은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) | | | | | | | | |
| <u>코로나19</u> <u>참여</u> <u>기여도</u> | 1) 서울특별시, 제주특별자치도 가) (2021년) 3.77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3.77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2452) + 0.0756]$ 나) (2022년) 1.8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초과 1.82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5233) + 0.0476]$ | | | | | | | | |
| | 2) 경기도, 인천광역시 가) (2021년) 2.30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2.30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4091) + 0.0591]$ 나) (2022년) 1.0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.0% 미만인 경우: $[XX.XX \times 1]$ | | | | | | | | |
| | 3) 강원특별자치도 가) (2021년) 28.68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28.68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315) + 0.0966]$ 나) (2022년) 18.5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8.52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489) + 0.0944]$ | | | | | | | | |
| | 4) 충청북도, 충청남도, 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가) (2021년) 14.18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4.18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639) + 0.0939]$ 나) (2022년) 7.15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7.15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1277) + 0.0869]$ | | | | | | | | |
| | 5)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가) (2021년) 10.04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10.04% 미만인 경우: $[(XX.XX \times 0.0905) + 0.0914]$ 나) (2022년) 5.22%이상인 경우 1점, 0.1%인 경우 0.1점, 0.1% 초과 5.22% 미만인 경우: | | | | | | | |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u>나)</u> (생략) 3)~5) (생략) | <u>까지 산출)</u> <u>라)</u> (현행과 동일) 3)~5) (현행과 동일) |